



중앙방역대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 비급여 제출 서류 관련 안내

1. 관련

- 가. 중앙방역대책본부-7888(2022.03.02.)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비 비급여 지급 관련 안내」
- 나. 대한약사회 제2022-0291호(2022.03.28)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유예기간 연장 요청」
- 다. 대한의사협회 제2022-0291호(2022.03.29)호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제출 유예기간 연장 요청」

2.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 등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이 환자 치료 및 처방·조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 필수비급여 소명 제출을 한시적(‘22.3.31일 진료분까지)으로 제외하며, 이후에는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렸습니다.

3. 그러나 **대규모 확진자의 지속발생**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의료기관·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코로나19 환자의 치료, 처방·조제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소명서 서식 제출 유예기간을 4월 15일 진료분까지 연장하며(추후 코로나19 확진 발생현황에 따라 연장 가능), 이후 제출*이 필요함을 안내드리니, 시·도 및 협회(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에서는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의료기관 작성 후 처방전과 함께 약국으로 전송→ 약국은 처방전과 함께 소명서식을 약제비 청구 시 함께 보건소로 제출. 끝.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감염병관리과장), 부산광역시장(시민방역추진단장), 대구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인천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대전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울산광역시장(감염병관리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감염병관리과장), 경기도지사(질병정책과장), 강원도지사(방역대응과장), 강원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충청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전라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대한의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장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주무관 **김미정** 지침관리팀장 **주수영** 전결 2022.3.31.

협조자

시행 중앙방역대책본부-12020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 <http://www.kdca.go.kr>

전화번호 043-719-9379 팩스번호 043-719-9469 / mj3113@korea.kr / 비공개(5)

질병정보 궁금할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